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78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이종배・배준영・권영진
이인선・김기웅・김미애
서지영・서명옥・박충권
엄태영・이만희・송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중 “18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18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 ---------- ---------- ---------- ---------- ---------- ---------- ---------- ---------- ---------- --------90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 ---------- ---------- ---------- ---------- ---------- ---------- ---------- ---------- ---------- ---------- ---90일----------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